

제45차 방송통신위원회

의안번호	제2016 - 45 - 162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6. 8. 11.	
공개여부	공개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제 출 자	위원장
제출일자	2016. 8.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6. 8. 11(목),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사항 : 방송지원정책과>

1. 의결주문

-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주요경과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15.4.29.)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의결('15.9.24.)

4. 주요내용

가. 재승인 대상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변용식	'17.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7.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임채청	'17. 4. 21.
	(주)매일방송	MBN	조현재	'17.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조준희	'17. 3. 12.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박노황	'17.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나.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으로 구성
 - ※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 (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운영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라.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사전 기본계획) >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계	1,000	1,00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마.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5. 추진일정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종편PP 중 승인유효기간이 '17.11월인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6. 8월)
- '16. 9~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6.10~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4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7. 4월)
- '17. 5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7. 6~9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0~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끝.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2016. 8.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 대상 방송사업자

-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 4개사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 2개사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대표자	승인유효기간
종편PP	(주)조선방송	TV조선	변용식	'17. 3. 31.
	(주)제이티비씨	JTBC	김수길	'17.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임채청	'17. 4. 21.
	(주)매일방송	MBN	조현재	'17. 11. 30.
보도PP	(주)와이티엔	YTN	조준희	'17. 3. 12.
	(주)연합뉴스티브이	연합뉴스TV	박노황	'17. 3. 31.

※ 승인유효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매일방송의 심사는 분리하여 진행

□ 심사 기본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 심사위원회 구성(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

○ 심사위원 위촉기준

-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o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17년도 재승인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14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승인유효기간이 5년인 사업자(주)와이티엔)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 심사위원회 운영(안)

o 기본방향

- 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승인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재승인 여부, 재승인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o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심사항목·배점과 평가방법 결정
 - 심사평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 ※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o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o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 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계량 평가 : 방송평가,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 다른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각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 점수를 부여

< 비계량 평가 등급별 평점 환산비율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80% 이상 100% 이하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60% 이상 80% 미만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40% 이상 60% 미만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20% 이상 40% 미만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0% 이상 20% 미만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12인) 평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 * 평가항목별 평균 산정시 최고 점수 및 최저 점수 제외(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기준 및 배점(안)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5개 심사사항(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자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종편PP	보도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26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계	1,000	1,00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추진일정

- '16. 8월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의결
- '16. 8~9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 공지
 - ※ 종편PP 중 승인유효기간이 '17.11월인 (주)매일방송은 별도 진행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6. 8월)
- '16. 9~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6.10~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2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2~3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17. 4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 공지
 -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신청 설명회 개최('17. 4월)
- '17. 5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접수
 - ※ 승인유효기간 만료 6월 전까지 재승인 신청(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 '17. 6~9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 접수
- '17. 10~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종편PP(주)매일방송) 재승인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

<붙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 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120(비계량) 70(비계량) 20(비계량)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90(비계량) 80(비계량) 20(비계량)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50(비계량) 30(계량) 20(비계량)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심사사항(대분류)	심사항목(중분류)	배점	
1.방송평가	①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②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③시청자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④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150(비계량) 80(비계량) 30(비계량)	26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⑤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⑥방송프로그램 수급, 제작·협력의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⑦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의 우수성	60(비계량) 70(비계량) 30(비계량)	16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⑧경영·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⑨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⑩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40(비계량) 30(계량) 10(비계량)	80
5. 방송발전을 위한 자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⑪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⑫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정도 ⑬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⑭(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30(비계량) 감점(계량)* 감점(계량)* 70(비계량)	100
계		1,000	

* 감점기준은 방송평가시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